전문가회의 자료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제1차 전문가회의 –

2016. 2. 2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전문가회의 자료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제 1 차 전문가회의 -

2016. 2. 2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일 정

1. 일 시 : 2016년 2월 26일(금) 11:00~16:00

2. 장 소 : 명가의 뜰 서울역점(서울시 용산구)

3. 주 제 : 연구사업 주요내용 및 법제개선방안 토의

4. 세부일정

○ 연구개요 소개 및 주제발표 :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종합토론
- 구교준 (고려대학교 교수)
- 임 현 (고려대학교 교수)
-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임형택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연구계획서 ····· 7

▣ 참고자료 ····· 17

▣ 연구과제명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박종준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특정 주요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전반적인 규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법」등에서 이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며,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에서 "산업집적"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어,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한 법적 규율이 혼재된 상황임

○ 클러스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국가식품클러스터), 「축산법」(국가축산클러스터)의 경우 특정 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정책적 수요가 반영된 상세한 규율사항은 크게 미비한 실정이며, 산업집적법과의 연계 규율도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 특정 산업의 경우 대내외적인 시장환경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학·연 및 중앙과 지역이 상호연계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 재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한 육성전략으로서 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게임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클러스터 등)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산·학·연·지역 연계에 의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제는 특정 산업부문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혼재된 법적 개념들(산업집적법상 산업집적, 산업특구, 연구단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개별 법령 및 정책들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성 진단(모형) 연구 - 연구자 : 김선배 외 (2005) - 연구목적 :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형성과 지속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적 기초연구	- 문헌연구 - 주요 산업의 전후방 연관구조 분석 - 해외 산업클러스터의 집적 패턴 분석	- 한국 및 일본의 산업클러스터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구조분석 - IT산업,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클러스터의 집적유형과 공간구조 분석 등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 과제명 : 공생발전 기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재편방안 연구 - 연구자 : 서지영 (2012) - 연구목적 : 공생발전 기반 산업클러스터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내외 주요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를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	- 문헌연구 - 법령조사 - 국내외 주요 사례조사	- 공생발전 기반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주요 사례로서 구미산업단지, 울산 생태산업단지, 네덜란드 푸드밸리 등을 소개함 - 국내 클러스터의 특성과 공생발전의 관점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방향으로 기업간, 지역간, 클러스터간 공생을 제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1 차 전문가회의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3	- 과제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연구 - 연구자 : 이준우 (2009) - 연구목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규율사항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제시	- 문헌연구 - 법령조사 - 전문가 자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규율사항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제시함

본 연구	-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미비한 법령의 경우나 개별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클러스터에 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한 경우 등에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클러스터 정책과 관련한 현행 법제상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마련	- 문헌연구 - 비교법적 연구 - 입법정책연구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조사	- 산업클러스터 관련 법으로서 산업집적법의 규율의의에 관한 분석 - 산업클러스터 관련 법령, 정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도출 -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 촉진, 산학연 연계 등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사항의 법제화 가능성을 검토함 - 산업별, 지역별 유형화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향성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산업 클러스터의 의의 및 운영 필요성
- 산업 클러스터의 이론적 동향 및 주요 요소에 대한 파악
- 국내의 경제적·산업적 상황과 산업 클러스터 추진의 필요성
- 산업 클러스터 도입에 있어서의 주요 고려사항

○ 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현황 및 관련 법제 조사·분석
- 국내 주요 산업 클러스터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 산업 클러스터 관련 현행 국내 법령의 규율내용 및 체계에 대한 검토
- 현행 국내의 산업 클러스터 추진상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

○ 해외 관련 입법조사 및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해외 주요국의 산업 클러스터 전략에 대한 분석
- 해외 주요국가 등의 관련법제 분석 및 운영현황 파악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검토
- 산업집적법 등 주요 근거법령과 관계 개별 법령들에 대한 정비방안 검토
-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 촉진, 산학연 연계 등 산업 클러스터 지원 관련 규율 검토
- 다양한 유형의 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방안 검토

▣ 연구추진방법

○ 산업 클러스터의 의의 및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관련 문헌조사-검토

○ 산업 클러스터 관련 주요 부서 실무담당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 산업집적법은 물론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법」 등 주요 산업 클러스터 근거 법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유형화를 통한 구체적 분석 실시

○ 주요 선진국의 산업 클러스터 추진전략 및 법제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조사

○ 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의 연구수행절차를 활성화하여 연구성과물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1	창조경제	1-1-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
			1-1-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경제 기반 조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1-16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 산업 생태계 조성
2	2-7	사회통합	4-18-116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해당 산업의 전략적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연계 및 해외진출의 효과적인 지원책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 제도 관련 법체계 정립을 위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채클러스터, 국가축산클러스터, 게임산업 클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가 이루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나 규율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개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법적 동력을 마련

▣ 연구기간

연구년차	(1년차/신규)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6.01.01.	종료일	2016.10.31

▣ 보고서 목차 가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산업 클러스터의 의의 및 현황 분석
제1절 산업 클러스터의 의의 및 추진필요성
제2절 국내 주요 산업 클러스터의 운영 현황

제3장 산업 클러스터 관련 국내 법제
제1절 산업 클러스터 근거 법제의 주요 내용
제2절 산업 클러스터 관련 유사법제의 주요 내용
제3절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산업 클러스터 전략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산업 클러스터 관련법제 분석
제3절 시사점 도출

제5장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 추진일정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산업 클러스터 운영 현황 등 조사/분석	■	■	■							
– 산업 클러스터 관련 국내 법제 조사/분석			■	■	■					
– 외국의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 조사/분석			■	■	■	■	■	■		
– 산업 클러스터 관련 문제점 검토				■	■	■				
– 산업 클러스터 관련 개선방안 도출							■	■	■	
– 보고서 작성						■	■	■	■	■
–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		●		●
– 전문가 자문회의(◉)			◉		◉		◉		◉	
– 착수심의, 중간심의, 최종심의	▲ 착수 심의					▲ 중간 심의				▲ 최종 심의

참 고 자 료

▣ 주요 산업 클러스터 관련 근거 법제의 유형별 분석

1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정의를 직접 명시하고 관련된 일부사항을 규정하는 유형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1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3466호, 2015.8.11., 일부개정, 시행 2016.2.12. 예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 4 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 5 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의2. (생략)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축산법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시행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2015.12.23.)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1 차 전문가회의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61호, 2016.1.6., 타법개정, 시행 2016.2.12.)	**제16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행정계획이나 정부 정책 등의 추진 사항으로 규정된 유형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8.28., 타법개정, 시행 2015.12.29.)	**제 5 조의2(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학·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1.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3.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병원 및「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83호, 2015.12.29., 일부개정, 시행 2016.6.30.)	**제 4 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43호, 2015.6.22., 제정, 시행 2015.12.23.)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조(업무의 위탁)**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 4. (생략)

구 분	법률명	규율조항
	제26728호, 2015.12.22., 제정, 시행 2015.12.23.)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이하 생략)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시행 2018.1.1.)	**제3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먹는 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 및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부조직 및 관계 기관 직제 중 업무분장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유형

구 분	법령명	규율조항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3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2015.12.30.)	**제 7 조(국토도시실)** ⑧ 복합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기업도시특별법령 입안 및 연구·발전 3. 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운영 4.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등에 관한 기준·지침의 연구·발전 6.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지원 (이하 생략)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 1 차 전문가회의

구 분	법령명	규율조항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94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2015.12.30.]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략)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885호, 2016.1.12., 일부개정, 시행 2016.1.12.)	**제41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둔다.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조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구 분	법령명	규율조항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타법개정, 시행 2015.12.30.)	② 실장·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1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2015.12.30.)	**제10조(산업기반실)** ⑧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협력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1의2.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의 수립·평가 및 추진 2.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 시·도 단위 지역산업 발전정책의 수립·추진 3.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8.20.> 6. 지역산업 혁신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7.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8. 해외 혁신집적지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이하 생략)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3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제 9 조(해운물류국)** ⑥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항·광양항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 2.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및 관리 3. 컨테이너항만 유통체계 개선 4.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의 육성·지원 5. 항만공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항만공사(PA)

구 분	법령명	규율조항
	2015.12.30.)	의 지도·감독 6. 항만관리법인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7. 항만운영 주체의 항만공사로의 전환 등 항만관리 체계 개편 8.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9. 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물류클러스터 구축 (이하 생략)

▣ 산업 클러스터 관련 법제의 최신 입법동향

1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추진

○ **(추진경과)** 2015년 8월 26일 이종진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72호)하여, 2015년 8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소위 심사 중에 있음

○ **(제안이유)**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1)]

○ **(법안체계)** 동 특별법 제정안의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음

1)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종진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 2015. 8. 26, 2쪽.

< 표 > 제정안의 체계[2)]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제4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제5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7조 물산업 진흥원 설립 등 제8조 센터 지정 등 제9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장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관 및 물기업 등 지원	제10조 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제11조 혁신형 물기업 지원 제12조 세제상의 지원 제13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14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5조 기술개발 등 지원 제16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7조 우수제품 등의 보급 지원 제18조 융자 및 투자 지원 제19조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제20조 물산업 실태조사 제21조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4장	실증화 시설에 대한 특례 등	제22조 실증화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부칙	-	제1조 시행일 제2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15. 11, 8쪽.

○ **(개념정의)** 제정안은 물산업 클러스터를“국가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적단지”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제4호)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개정경과)** 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일부개정 되어, 2016. 6. 30.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41.6퍼센트(2015년 9월말 기준)를 분양 완료하였으나, 클러스터 용지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미비로 소극적 관리에 그치는 실정이므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3)]

○ **(주요내용)** ①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신설), ② 시·도지사는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5조의6 신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관한 규율을 명시함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74호, 2015.12.29., 일부개정) 관련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종접속 : 2016. 1. 15.)